



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

특수형태근로종사자

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,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



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



아스팔트 살포기

아스팔트 탱크, 가열장치 및 살포장치를 가지고 있으며, 용해된 액체 아스팔트를 탱크 내에 담아 아스콘과 노면의 접촉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 아스콘 포장에 필요한 노면 또는 기존 포장면에 고압으로 살포하는 건설기계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

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


아스팔트 살포기 작업 특성



- 살포 폭과 살포량을 조절할 수 있어 도로 조건이나 시공 목적에 맞는 작업이 가능하며, 차량 주행시 동시에 살포가 이루어져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
- 고온의 아스팔트를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나 작업자의 화상 위험에 대비한 안전관리 필요

※ 주요 구조 및 기능



유제탱크

유제를 일정 온도(50~90°C)로 유지하면서 보관하는 저장용기



공기압축기

구동용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얻어 에어탱크에 일정한 공기압력을 유지시키는 장치



노즐 및 스프레이바(살포대)

기어펌프에 의해 이송된 액체 유제를 노면에 고압으로 분사하는 장치



유제펌프

유제를 가압하여 탱크내의 용해 아스팔트를 이송하는 펌프로서 일반적으로 기어펌프를 사용

작업 전

- 1 살포 장치, 노즐, 가열 장치,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점검 및 누유 여부 확인
- 2 작업 구간 통제, 근로자 보호구(안전화, 보안경 등) 착용 및 작업계획 공유

작업 중

- 1 아스팔트 고온 살포 시 타 작업자 접근 통제, 노즐 막힘 시 장비 정지 후 점검 실시
- 2 작업 진행 시 서행하며 급출발, 급정지는 금지하고, 폭우·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중지
- 3 사다리를 오르거나 내려올 때,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
- 4 고압호스 라인의 손상을 발견하면 즉시 점검·수리하고 작업 실시

작업 후

- 1 살포 장치, 호스는 화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잔여 아스팔트를 충분히 식힌 후 청소하고, 혼합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
- 2 작업 종료 시 장비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며, 연료 밸브 및 전원 스위치 차단

📖 필수 안전보건교육

🏠 노무제공 시 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)

- 대상** •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,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
- 방법** • 작업 배치 전,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
※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
- 시간** •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* 또는 간헐적 작업**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)
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*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• **교육시간 1/2 면제**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
• **전체면제**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
- 내용** •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•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•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
•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🏠 특별안전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)

- 대상** •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
•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
•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
- 방법** • 작업 배치 전
- 시간** •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,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
•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* 또는 간헐적 작업**인 경우)
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*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• **교육시간 1/2 면제**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
• **전체면제**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- 내용** •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※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

- 🔪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~ 제40조, 제86조, 제89조, 제91조 ~ 제93조, 제98조, 제99조, 제196조 ~ 제206조
- 🔪 공단 기술지원규정(KOSHA GUIDE) C-48-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